

1 예산총칙

제1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계		7,953,045,000	238,082,026
일반회계		7,214,090,000	215,938,230
특별회계		738,955,000	22,143,796
	기타특별회계	738,955,000	22,143,796
	의료급여기금운영	503,636,138	15,022,646
	치수사업	18,390,550	251,331
	광역교통시설	8,898,086	266,943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82,820,399	2,484,612
	학교용지부담금	18,281,703	998,451
	낙후지역발전	10,027,757	300,833
	소방안전	96,900,367	2,818,980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281,481천원으로 한다.

제5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간주 처리한다.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 감 비 율
계	7,953,045,000	7,936,067,500	16,977,500	0.21%
일 반 회 계	7,214,090,000	7,197,941,000	16,149,000	0.22%
특 별 회 계	738,955,000	738,126,500	828,500	0.11%
기 타 특 별 회 계	738,955,000	738,126,500	828,500	0.11%
의료급여기금운영	503,636,138	500,754,869	2,881,269	0.58%
치 수 사 업	18,390,550	8,377,686	10,012,864	119.52%
광 역 교 통 시 설	8,898,086	8,898,086	0	0.00%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82,820,399	82,820,399	0	0.00%
학 교 용 지 부 담 금	18,281,703	33,281,703	△15,000,000	△45.07%
낙 후 지 역 발 전	10,027,757	10,027,757	0	0.00%
소 방 안 전	96,900,367	93,966,000	2,934,367	3.12%